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 발의연월일: 2016. 6. 2.

발 의 자:유성엽・황주홍・장병완

김종회 · 김광수 · 신용현

윤영일·채이배·최경환국

손금주 • 이상돈 • 이용호

박주현 • 박준영 • 박주선

주승용 · 김중로 · 이동섭

김수민 · 정인화 · 박지원

오제세 · 최도자 · 김관영

박선숙 의원(25인)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 법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해야 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지게 됨.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활동개 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 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4·16세월호참 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후 선 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됨.

이 법 제5조제1호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개시시점을 해석하고,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세월호 특조위 관련 주요 일지

- 2015. 1. 1. : 특별법 시행

- 2015. 3. 5. : 위원 임명장 수여

- 2015. 3. 9. : 특조위 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2015. 5. 11. :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2015. 5. 18. :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

- 2015. 6. 4. : 특조위 운영 규칙 시행

- 2015. 7. 27. :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 2015. 8. 4. : 특조위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 2015. 9. 14. : 조사 신청 접수 개시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함(안 제7조의2 신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를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5조제1호·제3호·제9호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세월호 선체인양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위원 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u>구성을 마</u>치고 기획재정부가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1년 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이내에-----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 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 특 <신 설> 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5조제1 호·제3호·제9호 등의 업무수행 을 위하여 그 활동기간을 세월 호 선체인양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위 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

- <u>간 내에 세월호 선체인양이</u>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세월호 선체인양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에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종료되는 경우